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2. 13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10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(2022. 11. 2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복지국장 강현숙)

가. 제안이유

-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복지정책 수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·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영등포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 및 책무 (안 제1조~제3조)
-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4조)
- 1인가구 지원 사업 및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·운영 (안 제5조~제6조)
- 협력체계 구축 (안 제7조)
- 사무의 위탁 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종란)

○ 본 조례안은

-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복지정책 수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·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등포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」 이고 8개의 본칙 조문 및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-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정의, 책무 등 총칙적 내용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, 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1인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, 사회안전망 구축, 주거지원, 커뮤니티 지원, 건강 및 식생활 지원, 문화·여가 생활 지원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고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1인가구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1인가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

-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복지정책 수요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 조례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81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11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여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, 정의 및 책무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지원계획 수립·시행 및 지원 사업(안 제4조 ~ 제5조)
- 다. 지원 시설 설치·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 ~ 제7조)
- 라.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건강가정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2. 10. 6. ~ 11. 2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1인가구”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.
2. “1인가구 정책”이란 1인가구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, 권익 증진,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 사업)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돌봄서비스,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
2. 주거 지원 사업
3. 커뮤니티 지원 사업
4.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
5. 문화·여가 생활 지원 사업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 시설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인가구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무의 위탁)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4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
2.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
3. 제6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·운영
4.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